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6
----------	------

제출년월일 : 2008. 6.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지구환경과 소관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한 환경 보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나.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다. 환경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한 공중화장실운용자문 분과위원회, 친환경 상품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8. 5. 19. ~ 2008. 5. 29.(10일)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조례정비계획서
-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2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무원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체 대표

4. 시민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운영자문 분과위원회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것으로 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해촉)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안산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3조”를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9조”로 한다.

②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공중화장실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 공중화장실운영자문분과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소관 실과		지구환경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 성명·전화	지구환경과장 정 내 관 환경정책담당 정 송 자 안준식 (행정 2885)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분야의 이견조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에 시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제6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자문을 위하여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p>
<신설>	<p>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체 대표 4. 시민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인정하는 자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신설>	<p>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신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운영자문 분과위원회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자문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경인증제) (생략)	제12조(환경인증제)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지역의제21의 추진) (생략)	제13조(환경인증제)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자의 책무) (생략)	제14조(사업자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9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생략)	제1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등) (생략)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언론의 역할) (생략)	제17조(언론의 역할)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교의 역할) (생략)	제18조(학교의 역할) (현행과 같음)
제13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생략)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생략)	제20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현행과 같음)
제15조(국제협력강화) (생략)	제21조(국제협력강화)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제2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04
----------	------

제안년월일 : 2007. 9. 5.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안산시 환경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안산시 환경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환경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7조(안산시 환경인증제) ① ~ ② (생략) <u><신설></u>	제7조(안산시 환경인증제)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시장은 환경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